

수입식품 정보 알리미 [2026-94]

수입식품 등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안내

수입 영업자는 **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(사이버교육 3시간)**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 2026년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께서는 **2026년 12월 31까지 반드시 이수**하시기 바랍니다.

* 관련법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7조(위생 교육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(위생교육 시간 등)

■ 교육기관

교육기관	누리집 주소	연락처	교육형태
한국식품산업협회	www.kfia21.or.kr	02-3470-8150	온라인
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	edu.khff.or.kr	031-628-2300	온라인
한국식품안전협회	safetyfood.or.kr	02-2051-7006	온라인

- 영업자 위생교육은 **한국식품산업협회,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, 한국식품안전협회**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세 기관 중 **한 곳을 선택**하여 **교육을 수료**하시기 바랍니다.
-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교육수료 후 교육기관으로 **같은처리 별도 요청**하여야 전체 업체 이수완료로 반영됩니다.

■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

- **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, 과태료 처분(1차 30만원, 2차 60만원, 3차 90만원)**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관련법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46조(과태료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📖 이 정보는 관련 수입 영업자에게 공유 또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📖 위생교육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☎ 051-602-6237, 6236, 62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📖 동 알리미서비스 수신 (메일 또는 FAX) 을 원하지 않는 경우 ☎ 051-602-620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12.

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

【 공직비위·갑질 신고 및 공익신고안내 】 ※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.

▶ 공직비위·갑질 신고 : 식약처 홈페이지 “국민소통 > 여론광장 > 공직비위·갑질 신고방”

▶ 공익 신고 : 식약처 홈페이지 “국민소통 > 여론광장 > 부패 · 공익신고”